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64
----------	-----

제출년월일 : 2002. . . .

제 출 자 : 고성군수

1. 개정이유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하여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수립·집행 등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SOC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

2. 주요골자

- 가.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고성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제명 개정
- 나. 목적 조문개정 (안 제1조)
- 다. 구성 조문개정 (안 제2조제3항)
- 라. 기능 조문개정 (안 제4조)
- 마. 간사등 조문개정 (안 제7조제2항)

3. 관련근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경상남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4. 본 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고성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인과 종합민원실장, 문화관광과장, 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으로 하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4조제1호중 “민자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고, 제2호중 “민자유치시설사업”을 “민간투자유치시설사업”으로 하며, 제5호중 “민자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민자유치사업 담당(6급)”을 “투자유치 업무담당(6급)”으로 한다.

부 칙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고성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u> ----- ----- <u>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 ----- -----
제2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은 고성군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생략		제2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u>군의원 2인과 종합민원실장, 문화관광과장, 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u> 으로 하고, <u>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u> 중에서 <u>군수가 위촉하는 자</u> 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 4. (생략)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기능)	-----	----- ----- 1. <u>민간투자사업</u> ----- ----- 2. <u>민간투자시설사업</u> ----- ----- 3 ~ 4. (현행과 같음) 5. --- <u>민간투자사업</u> ----- -----
제7조(간사등) ① 생략 ② 간사는 민자유치사업 담당(6급)이 된다.		제7조(간사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민간투자사업 업무담당(6급)</u> -----